[별지 제21호서식] <개정 2016. 6. 23.>

수산종자 생산·방류 승인서

신청인 (신청기관)			접수일		
검사 시료	품종		크기(cm)		
임상검사 결과					
정밀검사 결과	검사항목	합격기준	검사 결과	판정	비고
종합 의견					
검사기간					

※ 이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승인서 발급일부터 15일입니다.

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제한된 수산종자의 생산·방류를 승인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수산과학원장 직인